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5.

발의자 : 김민기 · 김영호 · 김철민
노웅래 · 백혜련 · 송갑석
안민석 · 윤관석 · 윤준호
정세균 · 홍익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119소년단은 1964년 「경찰업무지침에 관한 규정」(내무부 훈령 제42호)에 따라 어린이 불조심 계몽활동을 위해 ‘어린이소방대’라는 명칭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음. 그 후 1999년 ‘한국119소년단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2013년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 및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음.

그러나 한국119소년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이 「소방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에 119생활안전과의 사무분장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어, 실질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 이에 한국119소년단연맹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, 그 설립과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의6 신설).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6(한국119청소년단)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

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.

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
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 및
활동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운영경비와 시설비
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
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
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⑤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
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

⑥ 제4항에 따라 한국119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, 그 밖의 재산에
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
있다.

⑦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
⑧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·지도·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⑨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7조의6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국119소년단연맹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17조의6에 따라 설립된 한국119청소년단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이 법에 따

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④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 단연맹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⑤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 단연맹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.

⑥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 단연맹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임직원으로 보며,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17조의6(한국119청소년단) ①</p> <p><u>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.</u></p> <p>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</p> <p>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⑤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</p>

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
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
있다.

⑥ 제4항에 따라 한국119청소년
년단에 기부한 금전, 그 밖의
재산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
한법」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
례를 적용할 수 있다.

⑦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
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
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
사용할 수 없다.

⑧ 한국119청소년년단의 정관 또
는 사업의 범위·지도·감독 및
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
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⑨ 한국119청소년년단에 관하여
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
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
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
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부과한다.

1. · 2. (생 략)

<신 설>

제56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제17조의6제7항을 위반하

	<u>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</u> <u>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